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4. 1 선고 2019가합124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A

변론 종결2021. 3. 18.

판결 선고2021.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18. 10.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8. 10. 23. 접수 제432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 2) 원고는 2016. 3. 31. C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3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3. 31.부터 2019. 3.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 주식회사는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받고 이를 담보로 2016. 3. 31. D 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3) 원고는 2016. 5. 20. 채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297,500,000원, 보증기한 2016. 5. 20.부터 2019. 5. 1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채무자 회사는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받고 이를 담보로 2016. 5. 20.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4) C 주식회사와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D 주식회사와 기업은행에 대한 각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회사는 2016. 10. 15. C 주식회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 1) 주식회사 E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3. 6. 12. 접수 제24771호로 채권최고액 44억 4,000만 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2) D 주식회사는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2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8. 6. 11. 접수 제23198호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3)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와 2018. 10. 23. 접수 제43247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채무자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사전구상 사유의 발생

- 1) D 주식회사는 2019. 4. 30. 원고에게 2019. 3. 30.자 채무자 회사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기업은행은 2019. 5. 20. 원고에게 2019. 4. 20.자 채무자 회사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9. 7. 24. D 주식회사에게 302,622,410원을, 2019. 9. 19. 기업은행에게 255,866,935원을 각 변제하였다.
- 2) 원고는 2019. 11. 5.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17141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2,240,626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은 300,381,784원(= 대위변제금 302,622,410원 - 회수금 2,240,626원)이 남아 있었고, 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187,67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은 255,679,265원(= 대위변제금 255,866,935원 - 회수금 187,670원)이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채무자 회사는 원고와 D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압류 및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 유무에 관하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2019. 7. 24., 2019. 9. 19. 각 발생한 사실, 피고와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 주식회사가 2019. 4. 30. 원고에게 2019. 3. 30.자 채무자 회사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기업은행은 2019. 5. 20. 원고에게 2019. 4. 20.자 채무자 회사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한 사실 이외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의 성립시기,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액수 및 연체 시기,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독촉 여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기 약 5개월 전에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를 할 당시에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채무자 회사의 별지 1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양시가 2018. 12. 5. 가압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소재지가 순천시인 채무자 회사의 광양시에 대한 체납금액의 발생원인, 체납금액의 액수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1) 채무자 회사의 무자력 상태 여부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1140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1, 8의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0. 23. 당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E은 2,308,295,707원, D 주식회사는 299,270,574원, 기업은행은 255,866,935원, 피고는 197,800,0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채권액의 합계는 3,061,233,266원(= 2,308,295,707원 + 299,270,574원 + 255,866,935원 + 197,800,050원)이었던 사실, 2019. 7. 29.을 기준으로 기준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인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의 총 가액은 4,978,782,06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2018. 10. 23.에도 적극재산의 가액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에서 위 채권 총액을 제하더라도 1,971,548,794원(= 적극재산의 가액 4,978,782,060원 - 채권 총액 3,061,233,266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남는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2015년경부터 고철물품거래를 하여 왔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고철물품대금 채무액은 197,800,050원이었다.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았고,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와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로도 2019. 6. 25.까지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초과하는 고철을 납품받았고, 이를 통해 채무자 회사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 이외에도 순천시 G 대 1,342m²를 포함한 9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경 주식회사 H와 채권 최고액 4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는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무자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성철

판사김준석

판사이유경

별지